

영등포구의회
제21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윤준용 의원 발의】



2019. 9. 27.

運 營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139호로 2019년 9월 19일 윤준용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 영등포구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의회장의 범위를 영결식에 한하도록 정함(안 제2조)

나. 의회장의 대상자를 정함(안 제3조)

다. 장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함(안 제4조)

라. 의회장의 장의기간 등은 「건전가정의례준칙」을 따르도록 정함
(안 제6조)

마. 장제비 기준에 대해 정함(안 제7조)

바. 조기계양 및 관계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
「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,
「건전가정준칙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집행

다. 입법예고 (2019. 9. 10. ~ 9. 16.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의회가 장의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, 총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- 안 제2조에서는 영등포구의회장의 범위를 영결식으로 한하고,
- 안 제3조에서는 의회장의 대상으로 임기 중에 사망한 영등포구 의회의원으로 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장의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하고, 장의위원회에서 의회장의 방법, 일시, 장소, 기간, 소요 경비의 지출 및

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안 제5조에서는 의회장에 대한 신문 공고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의회장의 의식 등은 「건전가정의례 준칙」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는 영결식장 설치 등 의회장의 소요비용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의회장 기간에는 조기를 계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, 불의의 사고로 현직 의원이 사망할 경우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34조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(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)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4. 18.>

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5조(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)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1. 직무로 인한 사망, 직무상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: 시·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
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: 시·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
3.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: 치료비 전액. 다만,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·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

해 등 보상심의회(이하 "보상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시·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·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
2.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
3. 의무직공무원 1명
4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

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.

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3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5조(건전가정의례준칙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(이하 "건전가정의례준칙"이라 한다)을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>

② 공무원, 공공기관·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·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

2010. 1. 18.>

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 건전가정의례준칙

제4조(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·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.